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 변경사항

1. 펀드명 :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

2. 정정사유 :

1) 규약

① 법 개정사항 반영

2)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② 법 개정사항 반영

③ 금감원 조치사항 반영(유동화증권 위험고지)

3. 변경내용

< 규약 >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15조(자산운용지시등)	법 개정사항 반영(법 제80조 제2항)	①(기재 생략)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기재 생략)	①(현행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u>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현행과 동일)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법 개정사항 반영(제192조 제2항)	①(기재 생략) ②(기재 생략) 1. ~4. (기재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①(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1. ~4. (현행과 동일)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④)(기재 생략)	(③~④)(현행과 동일)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일부 정정	①~⑤(기재 생략) 1.~2.(기재 생략) ⑥~⑩(기재생략)	①~⑤(현행과 동일) 1.~2.(현행과 동일) <u>3.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u> ⑥~⑩(현행과 동일)
제51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일부 정정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 <u>저축</u> 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변경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 한다.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최근현황 업데이트 유동화증권 위험고지 사항 추가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투자위험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u>최근현황 업데이트</u> 4. 투자실적 <u>최근현황 업데이트</u>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투자위험 <u>유동화증권 투자위험: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기초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ABSTB, ABCP) 중 신용 공여된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신용공여 기관의 신용등급에 연동됩니다.</u>

			하지만 별도의 신용공여가 없는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의 변동에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은 유동화 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사항 추가	추가	2019.04.04. ① 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② 법 개정사항 반영 ③ 금감원 조치사항 반영(유동화증권 위험고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유동화증권 위험고지 사항 추가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일반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최근3년 변동성: 0.02%	가. 일반위험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기초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ABSTB, ABCP) 중 신용 공여된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신용공여 기관의 신용등급에 연동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신용공여가 없는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의 변동에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은 유동화 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최근3년 변동성: 0.03%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 업데이트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최근현황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최근현황 업데이트	-	최근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최근현황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제192조제2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4) (기재생략) (5)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4) (현행과 동일) (5)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u>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p>최근현황 업데이트</p> <p>유동화증권 위험고지 사항 추가</p>	<p>(1) 투자전략</p> <p>3. 운용전문인력</p> <p>4. 투자실적</p> <p>(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p> <p>1. 주요투자위험</p>	<p>(1) 투자전략</p> <p>3.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p> <p>4. 투자실적 최근현황 업데이트</p> <p>(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p> <p>1. 주요투자위험</p> <p>유동화증권 투자위험: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기초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ABSTB, ABCP) 중 신용 공여된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신용공여 기관의 신용등급에 연동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신용공여가 없는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의 변동에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은 유동화 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